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25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한○수 (00.07.08.)	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상담일 ('26.6.24. 및 '26.7.2.)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②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8. 25. ~ 2026. 9. 8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하윤이(Tel. 051-860-213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